

●국토교통부고시제2022-000호

전라남도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지정(변경)

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10월 00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투자선도지구의 명칭·위치 및 면적(변경 없음)
 - 가. 명 칭 : 전라남도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
 - 나. 위 치 :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74번지 일원
 - 다. 면 적 : 558,765㎡
2.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, 시행기간(변경)
 - 가. 지정목적 및 필요성
 - 진도군의 풍부한 관광자원(자연경관, 로컬푸드, 민속문화예술공연 등)을 활용한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거점 육성
 -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추가적인 민간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성을 통한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
 - 나. 시행기간 : (당초) 2016년~2022년 → (변경) 2016년~2023년
3.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(변경)
 - 가. 개발사업 시행자 : (당초) (주)대명레저산업 → (변경) (주)소노인터내셔널
 - 소재지 :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 262
 - 나. 사업시행방식 : 수용방식
 - 다. 관리방법 : 진도군이 총괄 관리·운영할 계획(민간투자 시설은 민간 자체 운영)
4. 투자대상, 투자규모,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(변경없음): 게재 생략
5.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6.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7.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(안)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8.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(변경없음): 게재 생략
9.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(변경없음)
 - 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
10.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건설도시과(061-286-7363) 및 진도군 지역개발과(061-540-3887)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,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.